

—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대형국책사업인 구미제2하수처리장 건설과 연계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
- 동사무소의 시설 노후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용자 불편해소

3. 주요내용

[취득재산]

(원평1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)

- 토 지 : 2필지 738.7㎡
- 예정가격 : 736,484천원(공시지가 기준)

4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35조(지방의회 의결 사항)
- 지방재정법 제7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, 같은법 시행령 제84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-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
5. 검토의견

- 지방재정법 및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사유지를 취득하는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입니다. 원평1동사무소 신축부지 토지 2필지를 매입하는 것임.